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77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강명구 · 임종득 · 김기현

김기웅 · 서지영 · 김장겸

윤영석 · 구자근 · 한기호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조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규모 또한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60퍼센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재해복구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을 보조·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복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어업

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영어를 재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비를 보조 및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가 발생하여 같은 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 ⑪ (생 략)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해를 입 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비를 보조 및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 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조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u> <u>⑤ ~ ⑫</u> (현행 제4항부터 제1 1항까지와 같음)